

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실시 공고

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2027년도 안양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※ 2027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검토 후 지원여부, 비율, 한도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.

2026. 8. 18.
안 양 시 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내용(세부 지원대상 및 내용 확인)

연번	지원유형		지 원 내 용
1	기반시설		중소기업 밀집지역(제조업 3개사 이상) 도로포장, 상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 등
2	노동 복지	노동환경	매출액 200억원 이하중소기업(제조업) 기숙사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휴게공간 등
		지식산업 센터	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노후 주차장 · 화장실, 공공시설물 등
3	소방 안전	작업환경	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(제조업) 작업공간(바닥, 천장 등), 적재대, 환기집진장치, 컨베이어 작업대 등
		소방시설	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(제조업)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노후 전기배선 교체, 자동확산 소화기, 방화벽, 스프링클러, 피난설비, 위험물(리튬 등) 보관장소 설치 등

□ 추진일정

사업수요 조사 (공고 및 접수)	현장실태조사	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	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통보	사업 추진
2026. 8. 18.~ 2026. 9. 18. (안양시)	2026. 9월 안양시(신청업체) 경기도(표본조사)	2026. 12월 협의회 심의(경기도)	2027. 1월 예산조정 및 확정(경기도)	2027. 2월 ~ 10월 선정업체

2

□ 재원비율 : 도비 24%, 시비 56%, 자부담 20%

- 기 반 시 설 : 시·군별 차등 보조율 적용 → 안양시 도비 보조율 20%
- 지식산업센터 : 도비 24%, 시비 56%, 자부담 20% 이상
- 중 소 기 업 : 기업 순이익별 차등보조, 자부담 20~30% 이상

2. 접수방법

□ 접수기간 : 2026. 8. 18.(화) ~ 9. 18.(금) (주말, 공휴일 제외)

□ 접수방법 : 현장방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

○ 현장방문 :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235, 7층(안양시청 기업경제과)

○ 이메일 접수 : july23th@korea.kr

□ 문 의 처 :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김영수(☎031-8045-5566)

3. 제출서류(양식 첨부파일 확인)

공통서류	1. 사업계획서[서식] (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포함) 2. 자부담 협약서[서식] 3. 시설물 유지 동의서[서식] 4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[서식] 5. 사업자등록증 사본 6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7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고용인원 확인) 8. 최근 3년간(2023년~2025년) 재무제표(매출액 확인) 9.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(자가가 아닌 경우)
추가서류 (해당시)	1. 공장등록 증명서(공장건축면적 500㎡이상) 2. 여성기업 확인서(여성기업) 3. 뿌리기업 확인서(뿌리기업) 4.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(일자리 우수기업) 5.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(경기도 유망중소기업) 6.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(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) 7.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

※ 지원제외 :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, 자부담 확보 불가 기업,
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,
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, 세금 체납 기업 등

4.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
- **사업 선정기업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을 통해 사업진행 가능하므로 대비 요망**
 - ※ 사업 서류 제출 외에 전산 시스템 입력 조치 필요(지방보조금법)
- **사업추진은 자부담 확보 시 추진 가능(자부담금 미확보 시 사업 불가)**
 -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
 - 사업계획서 미흡,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심의 상정 불가
- **사업비는 부가세(VAT)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**
- **최근 5년(2022년 ~ 2026년) 사업 수혜기업 지원에서 제외**
- **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 중복 지원 불가**
 -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
- **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**
- **공사비 15백만원(VAT제외)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**
 -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(전기공사업 면허, 실내건설업 면허 등)
 -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협회(www.kosca.or.kr)사이트에서 조회 가능
- **사업비 20백만원(VAT제외) 초과인 공사,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 '누리장터'를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시공자와 계약 체결 추진**
 - ※ 단,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(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)
 -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, 물품제조, 구매용역 : 시공업체가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,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.
 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%이상인 경우
- **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하며, 전기공사업 등록된 공사업자가 시공**

분야별 세부 지원기준

1 기반시설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(제조업 3개사 이상)
지원내용	도로 확.포장, 상.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
지원요건	■ 사업 시급성, 주변환경, 시·군 재정여건,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■ 제조업 3개 사 이상 참여, 다수기업 우선 반영
재원비율	2027년 시·군 차등보조율 적용
지원한도	도비 2억원 이내 (총사업비 7억원 이내)
지원우대	■ 수혜효과(수혜기업, 종업원 등)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■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·동의를 완료된 사업 ■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높은 시·군 사업 ■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%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%이상인 사업 ■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¹⁾ 비율이 20%이상인 사업 ■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%이상인 사업
제외대상	■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- 당초 시·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■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,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■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사업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기반시설)이 있는 경우

1) 뿌리기업 : 주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

2 노동복지(노동환경)

구 분	세 부 사 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도내 소재 중·소기업 (제조업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·보수 ※ 지원허용 : 보일러,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※ 지원제외 : ① TV, 냉장고, 선풍기, 에어컨, 식탁 등의 집기류,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 등 해당 시설·설비 개·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《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》 - 지원대상: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※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- 제외대상: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,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, 공사추진 중인 경우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요건	■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원비율	■ 기업 순이익별(전년도 당기) 차등 보조 (자부담 20%~30% 이상) <table><tr><th rowspan="3">순이익 구간</th><th colspan="4">재원 비율(%)</th></tr><tr><th colspan="3">지자체 부담</th><th rowspan="2">기업 자부담</th></tr><tr><th>소계</th><th>도</th><th>시군</th></tr><tr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8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0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</td><td>75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5</td></tr><tr><td>2.5억원 초과</td><td>7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30</td></tr></table>	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소계	도	시군	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2.5억원 초과	70	30	70	30
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계	도	시군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																							
2.5억원 초과	70	30	70	30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40백만원(도비 12백만원, 시군비 28백만원) 이내 ※ 기숙사 신축 → 도비 30백만원,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우대	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²⁾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³⁾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■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■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⁴⁾ 또는 (신규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⁵⁾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노동·작업)이 있는 기업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
3 노동복지(지식산업센터)

구 분	세 부 사 항
지원대상	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(준공 후 7년 이상 경과)
지원내용	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,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※ 지원제외 :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, 임차료, 이자, 소모품 등 해당 시설.설비 개.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
지원요건	■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■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
재원비율	■ 지자체 80%(도비 30%, 시.군비 70%), 자부담 20%(이상)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60백만원(도비 18백만원, 시군비 42백만원) 이내 ※ 총사업비 제한 없음 (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)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■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

- 2)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: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, 근무환경,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
3)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: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.1% 이상 장애인 고용
4) 공모기준일 최근 3년 사업장 산업재해를 조회결과서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) 상 무재해인 경우
5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: 공모일 기준 「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」에 따라 인증기간이 유효한 경우

4 소방안전(작업환경)

구 분	세 부 사 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도내 소재 소기업 (제조업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작업공간 내부(바닥, 천장, 벽면, 창호 등) 개보수,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, 적재대, 작업대, 환기·집진·공기순환장치(산업용) 설치, LED조명 설치, 컨베이어 작업대 ※ 지원제외 : 소모품,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계·설비, 생산설비 부착·결합 작업대(주문제작 등), 냉난방기, 작업환경 개선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일반 사무·생활·청소용 비품 및 장비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요건	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■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원비율	■ 기업 순이익별(전년도 당기) 차등 보조 (자부담20%~30% 이상) <table><tr><th rowspan="3">순이익 구간</th><th colspan="4">재원 비율(%)</th></tr><tr><th colspan="3">지자체 부담</th><th rowspan="2">기업 자부담</th></tr><tr><th>소계</th><th>도</th><th>시군</th></tr><tr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8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0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</td><td>75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5</td></tr><tr><td>2.5억원 초과</td><td>7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30</td></tr></table>	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소계	도	시군	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2.5억원 초과	70	30	70	30
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계	도	시군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																							
2.5억원 초과	70	30	70	30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20백만원(도비 6백만원, 시군비 14백만원)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우대	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■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■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(신규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노동·작업)이 있는 기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
5 소방안전(소방시설)

구 분	세 부 사 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	■ 도내 소재 중·소기업 (제조업) ■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(준공 후 7년 이상 경과)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내용	■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방화벽, 스프링클러, 피난설비,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·개보수 ■ 위험물(리튬 등)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■ 노후 전기배선 교체(작업공간만 해당: 연구실, 사무실 제외) 등 ※ 지원제외 :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(예) 일반 소화기, 간이소화용구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요건	(중소기업) ■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(휴·폐업체 제외) ■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■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(지식산업센터) ■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■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원비율	■ 지식산업센터 : 지자체 80%(도비 30%, 시·군비 70%), 자부담 20%(이상) ■ 기업 순이익별(전년도 당기) 차등 보조 (자부담 20%~30% 이상) <table><tr><th rowspan="3">순이익 구간</th><th colspan="4">재원 비율(%)</th></tr><tr><th colspan="3">지자체 부담</th><th rowspan="2">기업 자부담</th></tr><tr><th>소계</th><th>도</th><th>시군</th></tr><tr><td>5천만원 이하</td><td>8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0</td></tr><tr><td>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</td><td>75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25</td></tr><tr><td>2.5억원 초과</td><td>70</td><td>30</td><td>70</td><td>30</td></tr></table>	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소계	도	시군	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2.5억원 초과	70	30	70	30
순이익 구간	재원 비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자체 부담			기업 자부담																								
	소계	도	시군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이하	80	30	70	20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원 초과 ~ 2.5억원 이하	75	30	70	25																								
2.5억원 초과	70	30	70	30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한도	■ 지자체 부담 70백만원(도비 21백만원, 시군비 49백만원) 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우대	■ 뿌리기업,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■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■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% 이상인 기업 ■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(신규)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외대상	■ 타 유사사업(정부, 경기도, 시·군 등)과 중복지원 ■ 임대·전대의 경우 건물주·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■ 시설이 양호하여 개·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■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■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■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(증축포함)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■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■ 최근 5년간 '기업환경 개선사업' 지원내역(소방시설)이 있는 기업 ■ 세금(국세, 지방세) 체납 기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